

# 2020년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결과

1. 일 시 : 2020. 9. 17.(목) 08:00~10:00

2.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내 SK게스트하우스 로즈룸

3. 참석현황 : 위원 30명 중 참석 23명, 불참 7명

참석위원(23)

○ 당연직(8) : 기획부총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시설관리국장, 정보화본부장, 발전기금상임이사

○ 임명(위촉)직(15)

- 학내위원(9) : 안○○, 박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박○○

- 학외위원(6) : 강○○, 박○○, 윤○○, 이○○, 정○○, 최○○

불참위원(7)

○ 연구처장, 이○○, 이○○, 전○○, 김○○, 서○○, 이○○

배석

○ 기획부처장

## 4. 안 건

전차회의록 보고

○ 2020년 제2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보고 안건

○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(안)

○ 「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」 일부 개정

심의 안건

○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」 일부개정정관(안)

## 5. 회의 결과

### 가. 전차 회의록 보고

#### □ 2020년 제2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- 보고자 : 김용철 예산과장
- 2020년 제2차 재경위원회(2020.4.29.)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.

### 나. 보고 안건

#### □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(안)

- 보고자 : 김용철 예산과장
- 안전요지
  -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지급되며, 총 재원은 30억 원으로 이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학부 수업료 본인부담액의 10%에 해당.
- 제시된 의견
  - 대학등록금 반환 감면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므로, 2학기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 시 법안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#### □ 「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」 일부 개정

- 보고자 : 박용수 사무국장
- 안전요지
  - 2020년도 법인직원 임금협약 반영.(기본급 3.167% 인상)
  - 직계비속·형제자매에 대한 가족수당 연령기준에 민법상 성년 반영.(20세 → 19세)
- 제시된 의견
  - 성년 기준 연령 하락으로 가족수당 환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람.

다. 심의 안건

□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」 일부개정정관(안)

○ 보고자 : 노혁준 기획부처장

○ 안전요지

- 서울대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“국내외 자회사 및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·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및 투자대상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여, 자문 및 육성” 추가(안 제52조제1항제8호)

○ 제시된 의견

- 정관 개정 취지가 서울대가 직접 지분 투자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,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함.

- SNU홀딩스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[별표2] 관련 법인 목록에 포함하고, 학칙이나 규정에서 SNU홀딩스 관련해서 규정을 정비하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람.

- 제52조제1항제1호 ~ 제7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이므로 제8호의 내용도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- 원안의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서울대학교인지 자회사(SNU홀딩스)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만약 자회사(SNU홀딩스)가 사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라면 조문 위치를 제4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람.

-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자회사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람.

○ 심의결과 : 원안대로 심의함.

- 제시된 의견 중,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후 후속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.